

거창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99-41
----------	--------

제출일자 : 1999. 8. 1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제정이유

-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한 탁노소설치및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골자

- 탁노소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설치 우선지역지정
- 시설설치구조, 설비기준선정
-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임무한계 설정
-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마련
- 수익자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제시등

제정근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동법제15조, 동법제35조제1항제7호,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거창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하는 거동불편 및 장애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탁노소(이하“시설”이라 한다)설치및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고,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읍지역 또는 인구 3천명이상 면지역의 소재지
2. 기 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 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진료원중 1명을 둘수 있으며 시설장은 당연직으로 시설소재관할 읍·면장이 되고,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 부양의무자가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 65세이상 보훈가족·장애·맞벌이가정 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시설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유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선임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1회 시설운영 지원협의회 개최
2. 비용수납금액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토의

제8조(비용의 수납) ①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시설운영지원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③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균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①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전직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 있는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